

高麗朝의 社會變遷과 山林의 役割

李 廣 遠

研究員, 資源經濟研究室

I. 序 論

II. 高麗時代의 田制와 山林의 役割

1. 高麗前期(太祖~穆宗: 918~1008)의 田制와 山林
2. 高麗中期(顯宗~高宗: 1009~1230)의 田制와 山林
3. 高麗末期(高宗~恭讓王; 1231~1392)의 田制와 山林

III. 結 論

I. 序 論

우리나라 山林政策의 中心은 山地의 資源化와 治山 綠化에 있다. 國土의 7割이상을 차지하는 山地의 綠化와 合理的 利用方案이야말로, 우리 經濟가 당면한 課題의 하나이기도 하다.

世界 森林帶로 볼 때 우리나라는 溫帶森林帶와 寒帶森林帶의 緩衝地로서, 풍부한 山林蓄積을 가질 수 있는 自然的·氣象的 要件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ha 당 立木蓄積이 16m³에 불과한 林業生産力을 보이고 있다. 山林蓄積이 미약하다는 것은 土地生産力보다 많은 林木을 伐採함으로써 일어난 결과라고 하겠다.

山林은 伐採하여 이용하기는 쉽지만 利用價値가 있는 林木으로 성장하는데 50~100여년이 걸리는 林業生産의 長期的 特徵으로 閉鎖經濟下에서 때로는 급격한 社會的·國家的 需要에 부응하지 못할 때, 局地的 또는 全國的인 山林荒廢現象이 나타나게 되며, 經濟的 價値가 클수록 收奪의 대상이 되기 쉽다. 各國의 山林政策은 山林生産力을 최대로 보호하는데 있으며, 木材生産도 山林生産力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調節

되고 있다. 독일과 같은 나라는 林地荒廢를 막고 山林生産力을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 15世紀부터 山林生産調節方案을 研究하여 왔다.

林業發展過程을 보면 풍부한 天然林을 伐採·利用하는 採取的 利用過程을 거치게 된다. 社會가 발전하고 共同生活體制에 들어가면 새로운 社會秩序와 用途에 따라 利用形態를 統制하고 구분하는 選擇的 利用過程을 거치게 되고, 木材需要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에는 育成林業으로 발전하게 된다.¹

封建時代에는 山林政策을 田制의 일부로 취급하였다. 당시는 山林蓄積이 풍부하였고 需要도 많지 않았으며, 가까운 林地에서 손쉽게 採取·利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山林利用을 規制하거나 간섭할 필요가 없었다. 人口가 증가하고 耕地需要가 증가함에 따라 農用地 供給源으로서 林地를 規制하게 되었을 것이고, 土地가 經濟的 基盤으로 중요시되면서 山林이 開墾·伐採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곧 時代的·歷史的 要請에 따라 山林에 대한 重要性이 다르게 인식되고, 山林利用의 形態도 변화하였을 것이다.

本稿는 우리 나라 林業發展 過程에서 高麗朝 各時代의 社會的·政治的 變遷에 따라 山林이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를 더듬어 보고, 社會經濟의 여건에 따른 林地利用의 諸形態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封建社會의 法制란 「法者 先王所治 天下國家之本也 是以創始之君主法創制 繼世之君 選守成憲 不可輕政 古

之道也」의 원칙하에 祖宗의 成憲을 蹂躪하는 立法을 하지 않았던 만큼,² 당시의 社會 諸現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데 研究의 限界가 있다. 한정된 범위 이기는 하지만 高麗史 世家編을 중심으로 各時代의 政治相과 各種制度를 파악하였고, 田制를 중심으로 한 社會經濟現象은 食貨志를 참고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山林의 利用形態와 役割 등을 論述하였다.

II. 高麗時代의 田制와 山林의 役割

1. 高麗前期(太祖~穆宗; 918~1008)의 田制와 山林

新羅를 멸망으로 인도한 要因 가운데 하나가 土地制度의 紊亂이었다. 後三國을 통일하고 高麗를 세운 직후, 王建은 田制改革에 착수하였다.³ 新羅末 寺院과 權門豪族들의 무질서한 土地占有과 爭奪이 諸政의 紊亂과 國家財政 枯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므로, 가장 먼저 土地制度의 정비에 노력하였으나 新羅와 泰封의 制度를 계승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建國初期에는 三國이 아직 완전히 統一되지 않았고, 官制 또한 定立되지 않았기 때문에 法制的 土地制度의 성립은 어려웠던 것이다. 太祖 19年(936) 新羅를, 20年(937)에는 後百濟를 合併하고, 太祖 23年(941)에 처음으로 役分田을 시행하였다. 役分田은 官階 如何를 막론하고 三國統一시의 性行의 善惡과 功勞에 따라 土地를 分配하는 制度였다.⁴ 土地의 分配는 官階의 等級에 따라 分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統一과정의 武力과 強權에 의한 것이 아니고 各地方諸侯의 위치를 보장함으로써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土地制度에 대한 法制的 改編이라기보다 新王朝 設立功勞에 대한 論功行賞의 形態였다.

光宗때 文武百官의 登用體制와 官階가 확립됨에 따라 景宗 元年(976)에는 田柴科를 정하여 高麗王朝의 封建的·經濟의 기틀이 되는 田制의 法制的 改編을 보았다. 同 2年(978)에는 有功者에게 土地를 지급하는 功陰田柴科를 정하여 官階에 따른 土地支給과 함께 役分

田의 성격을 절충하여 地方豪族의 利益을 보장해 주었다.

田柴科는 支給對象者의 신분서열을 四階八層으로 나누고 各層 밑에 여러 品階로 세분하여 貢分의 田土와 山林을 配定하였다. 各品階의 人員數를 알 수 없어 당시의 總支給數는 알 수 없으나, 標準額만 대략 田 3,650結, 柴 3,000餘結이나 된다. 山林은 品階에 따라 最高 110結에서 最低 10結에 이르기까지 支給하였다.⁵

新羅時代는 唐制를 모방하여 各己 所用에 따라 山林을 이용하였다. 封建社會의 주된 山林利用은 燃料이었다. 일반農家は 장작이나 枝條를 이용하였지만, 都城을 중심한 都會地는 炭(柴炭)을 사용하였다.⁶ 新羅末 이미 開京에서 가까운 松嶽山의 山林이 거의 파괴된 것으로 보아⁷ 人口가 密集되어 있는 地域을 중심으로 많은 山林이 燃料로서 伐採利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人口密集地域은 柴炭材 採取競爭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점점 더 外곽으로 柴地를 擴大해 나가는 동안 山林도 하나의 商品價値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高麗는 무질서한 山林利用을 규제하기 위하여 燃料採取地域을 近畿 以內로 제한하고 新羅의 田制와 달리 柴地를 支給하였다. 당시는 柴炭을 都城內外에서 직접 自給自足하는 때였으므로⁸ 物質의 報酬의 하나로 農地의 收租權과 함께 柴地의 收租權을 위양하였던 것이다. 모든 土地를 王權으로 흡수하고 再分配하는 形式을 통하여 職役을 포함한 收取制度를 포함으로써 支配者와 被支配者와의 關係를 規定하였다. 土地所有形態는 國有原則에 근간을 두고 土地의 私有化를 막기 위하여 地目的 收租權만을 위양하였고,⁹ 죽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國家에 返納하도록 하였다.¹⁰

그러나 財政運營은 全國의 土地에서 나오는 地代를 國庫收入으로 하여 財政用途別로 支出하는 方式이 아니었다. 土地를 財政項目에 맞추어 分割해서 財源을 확보하는 方式을 취하였다. 이미 土地所有變動 可能性

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官階에 따라 支給받은 公科田의 일정한 土地는 다시 農民에게 나누어 주어 百姓에 대한 軍役과 職役 租稅의 부담을 강제하는 封建的 土地管理形態를 취하였다. 田租의 收取는 收穫의 1/10로 정하여 高麗王朝의 經濟的 基盤을 여기에 두었다.¹¹

封建國家는, 國家財政에 필요한 많은 租稅收入을 올리는 데는 生産手段인 土地의 增給이 가장 좋은 方法이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土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다. 成宗 2年(983) 公廩田을 정하여 많은 土地를 分配하였는데도, 10年 후인 成宗 12年(993)에는 公須柴地를 나누어 주었고, 同 11年(992)에는 從來 收穫의 1/10로 정하였던 租稅率을 1/4로 改定하여 租稅收入을 꾀하였다.¹² 土地增給策은, 이미 光宗 23年(973) 이후 私所有地를 開墾할 경우에는 1年間, 公田은 3年間 收穫物을 開墾者所有로 하고 다음해부터 收租한다는 開墾獎勵策의 實施¹³로 많은 田土가 증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公須柴地까지 開墾對象으로 삼은 것은 山林에서 얻는 貢租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諸州郡縣과 驛路에도 各官用柴地를 分배하여 地方行政廳의 費用과 旅行官吏의 費用으로 쓰도록 하였다.¹⁴ 山林은 燃料採取의 目的뿐만 아니라 貢租를 거두어 들이는 財政稅源의 하나가 되었다. 물론 田柴科 이후 山林을 燃料採取地로만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光宗 19年(968)의 記錄에도 수많은 柴炭을 京外道路에 내주었다¹⁵는 것으로 보아 田柴科이전부터 貢租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山林에서 얻어지는 稅收보다 田地의 稅收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近畿地方의 山林을 科田 名目으로 分배하였을 것이다. 山林開墾 獎勵策으로 伐木이 시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正月中期 이후는 伐木을 금하여 自然의 調和를 깨뜨리지 않으려 하였다.¹⁶

穆宗 元年(998)에는 各品田柴科를 고쳐 改正田柴科를 정하였다.¹⁷ 이 때 支給田柴의 平均面積은 田 58結,

山林 32結로서 景宗 때의 田 68.5結, 山林 67.5結에 비하여 山林面積이 半減한 것으로 보아, 近畿地方의 많은 山林이 田地로 轉換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人口增加로 인한 土地開墾의 증대와 國家體制 整備에 따른 大小職役의 擴張으로 새로운 科田과 柴地의 필요성이 柴地의 축소를 加速시켰을 것이다.

이와 같이 山林은, 初期의 薪炭確保地로 收租權을 위양한 것이 貢租納入者인 隸農維持의 物的 基盤이 되면서 墾地化되었고, 財政收入의 稅源으로 變遷하였다. 이 시기에는 山林原野의 面積과 蓄積이 충분하였고, 耕地에 비해 經濟性이 미약한 편이었다. 山林은 農業生産의 補充物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支配層이나 農民 모두가 林木이나 柴草의 이용에 관심이 있었을 뿐 山林所有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아, 私所有化 傾向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2. 高麗中期(顯宗~高宗 : 1009~1230)의 田制와 山林

顯宗 元年(1009)부터 定宗 3年(1037)에 이르는 28年間은 高麗의 일대 受難期였다. 威鏡道와 滿州를 중심으로 勢力을 확장해 온 契丹과 女眞 그리고 남쪽의 倭寇의 침입이 40여 차례나 계속되었다. 특히, 顯宗 元年부터 2年初에 이르는 8次的 契丹侵略은 京城內外의 大廟와 宮闕, 民家를 남김없이 불태우는 참상을 겪었다.¹⁸ 많은 百姓이 軍役으로 나가거나 遊離되었으며, 食糧은 물론 種子까지 빼앗기는 등 農業에 큰 피해를 입혔다.¹⁹ 파괴된 京內外를 復興하기 위하여 成宗 11年(992)에 정한 公田의 租稅率을 收穫의 4分の 1에서 8分の 1로 半減하여 農民의 生産意慾을 북돋아 주었다. 그 뿐 아니라 民生安定과 財政收入에 필요한 田土를 供給하는데 많은 柴地를 分배하였고, 燒失된 大廟, 宮闕 및 民家の 修築에 필요한 林木調達에 山林을 分배하였다.²⁰ 國難期를 지나면서 山林은 戰後復舊資材의 供給處였고, 財源調達에 필요한 土地供給源으로 이

용되어 갔다. 잦은 外侵으로 政治紀綱의 解弛와 紊亂한 社會秩序를 틈탄 百姓들의 伐木과 築城 및 復舊에 따르는 伐木 등 人口가 밀집된 地域을 중심으로 무질서한 林木採取가 일어났던 것이다. 일반 林野는 물론 京都 주변의 山林과 所在州縣에서 특별히 禁護하여 온 三國時代 王陵廟의 山林까지 伐木되는 受難期를 맞았다.²¹

顯宗 4年(1013)에는 宮闕과 城廓造成에, 松嶽山과 京都 가까운 山林에서 林木을 조달하자, 周邊山林이 伐木됨으로써 작은 洪水에도 큰 山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洪水害가 일어나기 시작했다.²² 風水害가 戰爭으로 피폐한 農業生産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靖宗 元年(1035)에는 京城名山의 伐木을 금하고 植木을 권장하였으며,²³ 同 2年(1036)에는 전국적으로 山林의 伐木을 금하는 措置를 취하였다.²⁴

官制面에서는 새로운 武班職制가 증가하였고, 復舊에 따르는 많은 職役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公科田이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田柴의 支給은 멀리 邊境까지 擴大되어 文宗 13年(1059)에는 山林支給限界를 馬首嶺以內로 제한하였다.²⁵ 公田 외에 公臣이나 歸順城主에게 주었던 陰田柴도 文宗 3年 이후 現職官吏나 退職官吏를 불문하고 지급하였으며 子孫에게까지 相續을 허락하자,²⁶ 農地와 山林의 私有化와 世襲化가 시작되었다. 私有化가 시작되면서 權門勢家들의 私利私慾의 侵奪과 私占行爲는 새로 登科한 官僚들에게 지급할 公科田의 不足을 초래하였다. 文宗 23年(1069) 公科田의 支給面積을 擴大하기 위하여 近畿地方을 4倍 이상 확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科田의 지급은 계속 늘어나 더 이상 土地分配가 어렵게 되었다.²⁷

文宗 30年(1076) 官制百官의 班次와 祿科를 정리하고 田柴科를 再改定하기에 이른 것이다. 官職名에 田柴를 배당하는 것은 穆宗 元年時의 改定과 같으나 退職官吏와 限外科는 土地를 지급하지 않는 現職主義였다.²⁸ 支給된 土地面積은 穆宗 改定時보다 各科에 따라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15科까지 지급하였던 山林은 14科까지 지급하였고, 面積도 대폭 減少하였다. 都城 周邊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柴地도 開京을 中心으로 하루거리와 이틀거리로 나뉘게 되었다.²⁹ 都城周邊의 山林뿐 아니라 상당한 거리내의 山林도 거의 開墾되었음을 알 수 있다. 宋과의 關係改善에 따라 對外貿易에 필요한 交易船을 만드는데도 가까운 지역에서 材木을 구하지 못하여 멀리 濟州道와 南海 靈巖에서 가져 온 예나, 戰亂으로 파괴된 寺刹修理와 新創에 필요한 모든 建築材를 濟州道에서 베어 온 것으로 보아³⁰ 交通이 便利한 지역의 林木은 거의 伐採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王都 開京의 守護山이라는 松嶽山까지 벌거벗어, 雨水에 土砂가 流出되고, 巖石이 노출되는 등 심한 風水害가 계속되었다.³¹

田柴科 更定을 전후한 文宗代는 外戚을 중심으로 한 貴族政治가 행해졌다. 門閥과 族黨을 배경으로 한 貴族政治는 서로간에 暗鬪와 음모가 따르기 마련이며, 國王의 권위 밑에 安息을 취하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이다. 功陰田柴科 이후 王室背景을 안은 權門勢家들이 田地를 私有化하는 사례에서 출발한 農莊은 地方豪族兩班層으로 하여금 農莊의 창설과 운영을 중심점으로 勢力基盤擴充에 열을 품게한 動因이 되었다.³² 光宗 이후 私田 田租의 收取率을 高率(收穫量의 2分の 1)로 策定함을 기화로 權門勢家들은 勢力基盤이 되는 私田擴張에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았으며, 高利貸業으로 빈약한 百姓들을 收奪하고 田丁을 빼앗는 事例가 허다하였다.³³ 田丁을 빼앗긴 農民들은 各地로 遊離하여, 많은 農家가 비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生計를 위해 山林으로 들어가 山林地帶를 개간하기 시작했다.³⁴ 이로 인하여 많은 山林地帶가 개간되었고, 무질서한 火耕으로 山林이 불타는 등 山林被害가 급속히 늘어가기 시작했다.³⁵ 權門勢家들은 계속 새로운 開墾地를 빼앗고 또 開墾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農莊은 遠隔地

까지 발전하여, 佃戶體制를 지향하였던 均田制度가 大地主制度로 변질되었다. 大地主의 出現과 공공연한 土地兼併은 백성들의 生活을 도탄에 빠트렸다. 새로 登科한 官吏에 지급한 公科田의 부족과 財政收入의 고갈은 田土의 개간을 더욱 獎勵하였다. 睿宗 11年(1116), 王이 西京에 행차할 때 沿路의 田地로 개간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守丞을 불러 문책하였다³⁶는 記錄으로 보아 土地增給策에 얼마나 努力했는가를 알 수 있다.

外戚의 세력이 신장되고 王權이 약화되면, 國王의 권위를 중심으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해 오던 貴族政治의 支配秩序는 상대적인 秩序의 안정 속에 잠재해 있던 여러 矛盾과 弊弊가 표면에 나타나기 쉽다. 上部構造의 혼란에 편승하여, 누적되어 온 下部構造의 모순이 발현·폭발하고 다시 上部構造에 반영되어, 文宗에서 仁宗代에 이르는 80년간의 支配秩序는 混亂狀態가 계속되었다. 外戚으로 세력을 잡은 權門豪族들은 私田擴大뿐 아니라 山林까지 私占하기에 이르렀다.³⁷ 田柴科體制的 붕괴와 土地兼併의 새로운 진전이였다. 석은 곡식을 강제로 주어 利子를 취하거나 묵은 밭에도 租稅를 징수했으며,³⁸ 耕作할 수 없는 山林에 대해서도 小作農이나 인근 住民에게 稅金을 징수하는 폐단이 많았다.³⁹

高麗時代에는 一般農莊뿐 아니라 寺領農莊이 있었다. 王建 十訓要의 1條에 “我國家大業 必資諸佛護衛之力”이라 하여 國運의 번창과 王室의 壽福康寧을 북돋우는 지름길로 佛教를 포용하였다. 王建 在位時에는 十大寺刹을 창건하였고, 文宗은 1,200間이나 되는 興天寺와, 2,800間的 興王寺를 창건하는 등 歷代王에 의해 創建 또는 重創된 寺院만도 3,800寺에 달한다.⁴⁰ 王建이 창건한 寺院에는 반드시 農莊이 설치되었고 後代王들에 계승되었다.⁴¹ 端儀長翁主가 田地와 奴婢文書를 安樂寺에 회사함으로써 시작된 寺領農莊은 엄청난 農莊의 所有主로 번창하였다. 寺院은 王室에 의해서 國家

的인 土木工事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民家를 빼앗아 資材를 삼는 등 많은 人員을 動員하여 全國 곳곳의 山林을 伐採 利用하였다.⁴² 寺院은 주로 開京 주변에 많이 創建되었으므로, 近畿地域 山林이 주로 많이 伐採되었고, 濟州나 南海沿岸의 山林도 많이 伐採되었다.⁴³ 資材의 확보는 물론 農莊擴大에 따르는 耕地確保대가 비교적 山林地가 대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農莊創設 面積에 비례하여 山林이 開墾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밖에 風水信仰에 의한 잦은 宮城의 建築과 三京造成, 權門豪族들의 저택 건축으로 三道의 山林이 伐木되는 일이 계속되었다.

한편 契丹侵入으로 國內적으로는 崇武의 기풍이 일어났다. 睿宗 2年(1107)~3년에는 女眞을 征伐하고, 四城六鎮을 쌓았으며, 千里長城을 구축하는 등 各州郡縣의 都會와 邊方에 築城이 있었다. 築城에는 세 가지 方法을 사용하였다. 大路를 차단하는 데는 石城을 쌓았고, 平野地나 낮은 山에는 騎兵을 막는 方法으로 木寨을 세웠다.⁴⁴ 바닷가에는 石避을 쌓거나 木柵을 만들어 세웠다. 이러한 築城法은 國防의 常規로 여겨 木材를 國防用材로 가장 많이 利用하였다고 한다.⁴⁵ 顯宗 2年부터 毅宗까지 160년 동안 建築, 建設, 軍用材 등 木材需要가急增했다. 많은 山林이 伐採되었고, 이를 기화로 한 開墾과 火田 등 山林伐採가 계속되어, 山이 무너지고, 물이 솟는 異變이 자주 일어나므로 누차 禁伐을 命하였으나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다.⁴⁶

李資謙, 妙靑 등 支配階級の 몰락과 함께 새로운 支配階層의 출현으로 政權이 바뀔 때마다 貴族들간의 土地爭奪戰은 統治階級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農民生活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合法的 收租地를 非法의 收租地로 탈취한다는 것은 새 收租者의 훨씬 더 가혹한 收奪可能性을 의미한다. 또 새 非法的 收租者가 나타났을 때 이전의 合法的 收租者가 순순히 물러가는 경우에는 問題가 없지만, 自己權利를 계속 주장할 경우 같은 土地에 대한 收租權의 행사가 二重으로 이루어져

農民生活은 날로 도탄에 빠지게 된다.⁴⁷ 이러한 社會弊勢를 배경으로 建國以來 賤待받아 오던 武臣들이 文臣들의 勢力強化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 毅宗 24年(1170)에는 鄭仲夫를 중심으로 한 武臣政權이 수립되었다. 武臣政權이 비교적 쉽게 成功할 수 있었던 것은, 叛亂의 지도자들은 武官들이었으나, 政變에 필요한 武力은 貢役의 담당자이며 收奪의 대상인 農民出身의 府兵이었다. 武臣政權은 高宗 45年(1258)까지 약 90年間 계속되었는데, 한결같이 土地의 掠奪의 兼併이 강행되었다.⁴⁸

明宗 3年(1171) 모든 文臣들이 殺害되었고 三京 四都 護府 八牧 郡縣官驛의 所在에 이르기까지 모든 官吏를 武人으로 대체하였으며, 王室, 貴族, 寺院 등의 財産을 沒收 分配함으로써 막대한 農莊의 소유는 武臣에게 넘어가게 되었다.⁴⁹ 農民生活은 가속적으로 轉落하였고,⁵⁰ 새로운 支配秩序에 기대를 걸었던 農民들은 武臣政權에 실망한 나머지 明宗, 神宗 兩代 30여년간에 걸쳐 대규모의 農民戰爭이 전국을 휩쓸었다. 武臣들은 叛亂 暴動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政治的 基盤을 확립하였고, 막대한 農莊을 私有化하였으며, 權力鬭爭으로 政經體制는 혼란에 빠졌다.⁵¹ 諸州郡縣의 官吏와 守令들이 백성의 財物을 약탈하고 公私의 役을 함부로 일으키므로, 이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자곳으로 흩어져, 農業은 피폐되고, 貢租의 稅收가 줄어들어 財政의 어려움은 날로 심하였다.⁵² 各道에 安撫使를 파견하여 여러 번 遊離者를 生業에 돌아가게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⁵³ 山林은 山林대로, 財政 確保를 위하여 山林에 대한 貢租가 많아지자 大廟의 소나무까지 자르는 등 山林採取가 심하므로 軍律로서 禁令을 내렸지만 實効를 거두지 못하여,⁵⁴ 高宗 17年(1230)에는 柴炭의 貢租를 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⁵⁵

이와 같이 高麗 中期의 山林은 收租權의 확보로 重臣 顯貴나 地方豪族 兩班層의 勢力基盤을 확립해 주는 墾田確保 供給地로 넘어 갔고, 農莊이나 寺院에 필요한

用材供給地이면서 新墾開拓地로서, 各種 土木用材와 國防用材로서 일반 農民의 生活基盤用地와 燃料提供基地로 이용되었다. 즉 풍부한 天然林을 伐採利用하는 採取利用段階에 있었다. 당시는 인구도 많지 않았고, 山林 蓄積도 풍부했기 때문에 柴草나 建築材나 家具材의 伐木의 대량 이용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禁伐에 관한 規制가 대부분 「立春後 禁伐木」이라 하여 萬物發生時의 伐木은 禮義에 어긋나는 일로 보고, 自然에 대한 道德的 規程로 다루고 있다.⁵⁶ 火耕도 自然愛護에 대한 崇山思想에 위배된다는 의미에서 罪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諸政紊亂과 함께 수많은 山林伐採와 火耕이 人口가 집중되어 있는 村落周邊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적지 않은 風水害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3. 高麗末期(高宗~恭讓王: 1231~1392)의 田制와 山林

高宗 18年(1231)부터 7회에 걸친 蒙古의 침략은 武臣政權을 몰락하게 하였으나 契丹侵入의 여파가 가지지 않은 國內農業과 百姓들의 生活에 일대 타격을 가하였다. 30餘年の 抗戰期間 동안 開京의 모든 宮闕과 民家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大小都會가 거의 파괴되어, 모든 產業이 마비되었다. 戰禍를 피해 대부분의 城邑에는 빈집만 남아 農事 때의 收穫을 거두지 못하였으며,⁵⁷ 田土는 풀이 우거지는 戰傷을 겪었다.⁵⁸ 年 2회의 貢賦를 충당하는데도 中外大臣에 이르기까지 貢物을 거두었고, 갈수록 더 많은 租貢을 요구하였으며, 때때로 軍士를 發征하여 人口와 財物을 奪取해 갔다. 高宗 41年(1254)에는 蒙古侵略에 의해 사로잡혀 간 자가 男女 26萬 8千 餘名이나 되었고, 죽은 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⁵⁹ 蒙古軍이 가는 곳마다 모두 갱터미가 되었다. 때로는 諸道의 收穫을 모두 蒙古兵이 所獲하여, 飢饉과 질병이 그치지 않았다.⁶⁰ 元宗 4年(1263)의 記錄에 의하면 戰亂以後 飢饉이 계속되어, 國民의 生存者가 百에 二·三도 안되고, 收穫도 十에 八·九

도 안되었다⁶¹는, 것으로 보아 農業과 百姓이 받은 타격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元宗 12年(1271)에는 鳳山 등지에 營軍, 屯田을 두고 필요한 소 3,000頭와 種子, 農器, 軍糧을 요구하여, 全國의 農牛를 모두 다 거두어 들였어도 990頭에 지나지 않았다.⁶² 이외에도 駐屯軍의 屯馬料까지 요구하였다. 高宗 27年(1240)부터 元宗 13年(1272)까지 32年동안 蒙古에 보낸 貢物을 제외하고 駐屯軍의 軍糧이 109,199碩 6貢였으며, 馬牛料가 433,005碩, 6斗, 對使料가 17,171碩, 種子 15,000碩, 都合 574,356碩이나 되었다.⁶³ 이는 비교적 평온했던 忠烈王 5年(1279)의 全收穫과 前年の貯蓄分을 합친 70,727漢碩에 비하여 全收穫分の 7年半分に 해당되는 양으로서 每年 收穫의 1/4을 蒙古軍의 兵糧과 屯馬料 등으로 소비한 셈이다. 國內의으로는 三別抄의 抗戰으로 忠淸·全羅 兩道の 租稅를 징수하지 못하였고, 또 三別抄軍이 軍糧으로 거두어 가 財政形便은 심히 어려웠다.⁶⁴

山林의 被害도 상당하였다. 元宗 12年 蒙古宮室 建築에 필요한 材木을 要求하였는데,⁶⁵ 小經木밖에 대지 못하자 同 13년에는 大經木을 요구하여 전국적인 伐木이 시작되었다.⁶⁶ 元宗 14年(1273)에는 寺院造成別監을 두고, 寺院 重修에 따르는 材木調達이 하달되었다.⁶⁷ 國內山林에서 材木을 얻기가 힘들게 되자 500人으로 구성된 斫木使를 멀리 鬱陵島까지 파견하여 山林을 伐採하도록 하였다.⁶⁸

高麗時代는 계속되는 內憂外侵을 王室能力만으로 감당하기는 힘들었다. 王權을 유지하고 外敵을 막는 데는 精神的 支柱에 의한 國民의 단합을 유지하는 方法이 필요했다. 高麗史의 대부분을 外侵과 內亂에 시달리면서 고麗의 佛敎가 지나치도록 융성한 것은 佛法에 의한 外勢를 배재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 같다. 佛敎의 융성을 위해 國難을 당할 때마다 시작한 것이 大藏經의 彫板이다. 顯宗 때는 12萬大藏經이 이룩되었는데 蒙古亂에 燒失되었고, 高宗 24年(1237)에는 大藏都監을

설치하여 16年동안 8萬大藏經을 彫板하였다.⁶⁹ 大經木 1株로 10~15板을 彫板한다고 하여도 필요한 材木이 大經木으로 2萬株나 되며, 버려진 材木이나 未利用材까지 합하면 벌채된 山林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이다.

元의 東征計劃으로 高麗에 戰艦 900隻과 所要食糧을 課하게 되자, 元宗 15年(1274)에는 工匠, 徒役 32,500名과 材木을 各道에 분담시켰다.⁷⁰ 이때 濟州道, 全羅道 邊山, 羅州 天冠山의 山林이 거의 造船用材로 사용되었다.⁷¹ 이어 2次 東征의 戰艦까지 修造케 하여 資材를 收用하였으나, 交通이 편리한 지역은 山林이 고갈되어 얻지 못하였으므로, 各道 壯丁을 동원하여 江原道 輿地에서 나무를 베어 京都로 輸送케 하였다.⁷² 忠烈王 5年(1279), 다시 戰艦 900隻을 造船케 하고 梢工, 水夫 15,000名과 征軍 1萬名, 兵糧 11萬漢碩을 요구하자, 官吏를 三道에 보내어 戰艦을 짓게 하였는데 水夫까지 動員하여 魚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⁷³ 1·2次 東征에 실패하고 나서도 元은 계속 造船과 修理를 課하여, 元宗 15年(1274)부터 忠烈王 15年(1289)까지 15년 동안 모두 3,000隻의 戰艦을 건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各道 沿路周邊과 海路邊의 林木이 모두 伐採되어 더 이상 造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元에 通告할 정도였다.⁷⁴ 심지어 元의 皇太后가 佛寺를 짓는데까지 材木을 요구하여, 審陽軍 2,000名과 배 100隻을 동원하여 百頭山의 林木을 베어 압록강으로 실어내는⁷⁵ 등 극심한 山林收奪을 계속하였다.

이 외에 忠烈王 元年에는 市街地를 再造成하였고, 庚安, 延慶 2宮을 修築하는데 모자라는 材木을 全國의 老巨樹와 公私屋材를 거두어 3년 동안 410楹의 巨大한 土木工事를 시작하였다.⁷⁶ 宣義門 안의 빈 땅에는 瓦屋을 짓게 하고 五部の 民家를 모두 기와로 덮게 하여 私廩을 허락함으로써⁷⁷ 이에 따른 燃料材의 需要도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忠烈王 17年(1271) 이미, 山川 林藪의 7割 이상이 모두 伐採되어 農耕地로 利用되

있었다⁷⁸고 한다. 蒙古侵略 이래 100여년간은 대규모의 山林收奪期였다.

高麗末의 國民生活은 극도로 轉落되었다. 蒙軍의 兵糧을 해마다 每戶에서 거두었고, 東征과 抗爭에 많은 人力이 損失을 입고 戰艦修造와 各種工役에 징발되어, 겨우 老弱者만이 農事에 종사했다. 風水害는 거듭 닦쳤고, 軍國의 需要에 가지고 있는 食糧을 모두 빼앗기고 나면 木實과 草葉으로 겨우 연명할 정도였다.⁷⁹

政治的으로는, 王室은 元의 駙馬國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弱화되었다. 그 결과 王室을 위시하여 內僚輩, 附元分子 등 새로운 權力層이 갖은 수단으로 土地兼併을 일삼았다.⁸⁰ 宦官 및 權貴가 모두 私田을 받아, 많은 것은 2~3千結에 이르렀고 良民을 占有하여 賦役을 감하고 民田을 侵奪하는 例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⁸¹ 이들은 小作民으로부터 租稅를 거두면서 官에 낼 三稅를 포탈하여, 國家財政은 갈수록 어려워다.⁸² 亂을 피해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 大小 朝官도 田土를 侵奪하고 백성을 착취하여 私利를 도모함으로써, 民生은 더욱 어려워고,⁸³ 田土를 빼앗긴 農民들은 山林으로 들어가 火田을 擴大하여 遠近의 모든 山이 火魔의 被害를 입지 않는 것이 없다고,⁸⁴하였다.

恭愍王 2年(1352)부터 37年 동안 紅巾賊의 侵入과 倭寇의 노략으로 인한 被害는 蒙古侵略으로 인한 被害에 버금갈 정도였다. 특히, 倭寇의 노략질이 심하여 海岸에서 40~50里 안에는 전혀 耕作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만큼 公科田의 支給面積이 줄어들어 民田의 收奪이 더 심했다.⁸⁵ 土地兼併은 처음에는 私田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公田까지 蠶食하여 國家財政을 破綻시켰고 마침내는 田柴科制를 붕괴시키고 말았다. 그로 인하여 新進 士大夫官僚의 生計를 보장할 科田의 支給이 불가능하여 新進官僚들은 權門豪族에 불만을 품고 新興武官과 합세하여 田制改革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⁸⁶ 李成桂의 田制改革은 大土地兼併과 農莊擴大에 대한 新進官僚層의 불평을 반영한 것으로서 恭讓王 2年

(1390) 公私田籍을 불사르고, 다음해에는 田制를 개혁하여 科田法을 시행하였다. 모든 農莊이 國家에 沒收되어 新進官僚들에게 再分配되었으나, 田柴科와는 달리 山林은 分配하지 않고 公收되었다.⁸⁷ 科田法의 성립은 麗末 新進官僚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背後에서 土地制度의 紊亂으로 二重 三重의 수탈을 당하여 신음하던 農民들의 絶對的인 성원을 얻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科田法 施行으로 土地改革에 성공한 李成桂는, 社會風潮가 禁令 하나만으로 고질화된 山林收奪을 막을 수 없으므로, 새로이 도입된 朱子學의 自然思想을 이용하여 各道名山에 國公候를 부여함으로써 自然愛護思想에 의한 崇山思潮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⁸⁸ 山林川澤은 土地國有原則에 의해 公收하여 國家需要에만 應당하도록 하였다. 高麗 土地制度의 紊亂이 私田擴大의 疇에 있었고, 새로운 土地供給地가 林地였기 때문에 根本原因을 제거하고 國用材의 확보를 위해서 山林의 私占을 금하는 한편 山林을 公收한 것으로 보인다. 「山澤之利 萬人共利」의 原則下에 山林을 國民共用으로 개방한 것은 權門豪族의 山林私占으로 인한 被害와 不平을 막고, 燃料과 家財所用의 山林利用을 자유화함으로써 新王朝의 基盤을 다짐과 동시에 百姓들의 懷柔策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많다.⁸⁹

III. 結 論

高麗는 수세기 동안 封建體制에 의하여 國家를 유지하여 왔으나, 土地의 封建的 領有에 의한 土地支配關係가 아닌, 國有에 기초를 둔 中央集權의 官僚組織에 의하여 構成되었고, 官僚에게 土地를 급여하여 俸祿에 대신하는 封建制였다. 따라서 官僚體制의 紊亂과 와해는 土地制度의 紊亂을 가져오는 連繫的 社會構造로 변천하여 國家財政과 體制存立을 위태롭게 하였다. 新羅도 土地制度의 紊亂에 멸망

의 큰 원인이 있었으며, 高麗 또한 田柴科의 붕괴가 멸망의 큰 원인이 되었다. 새로운 王朝의 건설에 새로운 土地制度가 國家體制와 經濟的 基盤을 다지는데 등장하였고, 國家安定은 土地制度가 가장 確固한 시절에서 비롯되었다.

高麗時代의 山林利用形態는 燃料나 農業의 補充物 정도에서 풍부한 天然林을 村落 가까이서 採取 利用하는 形態였다. 山林은 田制內部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田制의 紊亂은 土地制度의 紊亂을 초래하였고, 山林은 農作物과 달라 한번 伐採하고 復舊하기까지는 오랜 時日이 걸리기 때문에 被害의 정도가 혹심했다. 또 林地는 農業의 補充的 位置에 있었기 때문에 農業이 발전되는 만큼 資材나 肥料採取源으로 많이 이용되었고, 農耕地의 대상으로 많은 山林이 開墾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였다.

經濟的인 면에서는 封建社會에는 租稅收取源이 土地였기 때문에, 土地의 대부분이 山林으로 뒤덮혀 있던 古代나 中世社會는 田地에서뿐 아니라 山林에서도 租稅를 收取하려 하였다. 高麗時代에도 光宗 때부터 貢租의 對象으로 稅源의 일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國家財政의 필요에 따라 經濟성이 높은 田地로 開墾되어 公科田으로 支給되거나 收租의 대상이 되었다. 人口의 增加에 따라 더 많은 農耕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土地供給源으로서 또는 水源地로서 제공되기도 하였다.

國防面에서는 兵站供給源으로 軍需物 材料源이었고, 戰後復舊를 위한 建設期에는 建築資材나 土木工事に 필요한 主材料源이었다. 山林은 역사를 통하여 國家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國家와 國民에게 基礎資材에서 食糧源까지 제공하였고, 恤民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高麗朝의 社會變遷에 따른 山林의 役割을 時代의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高麗初期에는 新羅末 이래로 地方豪族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生活基盤을 食邑이나 賜田의 형식으

로 維持시켜 주는 方法으로 分配되어 高麗 太祖의 王權 確立을 뒷받침해 주는 役割을 했다. 政治體制가 정비되고, 王權이 확립되면서 職役을 포함한 租稅收取의 대상으로 分配되어 貢租納入者인 隸農維持의 物的基盤이 되었다. 人口增加로 土地需要가 증대되면서 開墾의 대상이 되었다.

高麗中期에는 戰亂期를 거치면서 戰後復舊에 필요한 建設材의 供給地였고, 財政壓迫을 해결하려는 方法의 하나로 山林에서도 租稅를 징수함으로써 많은 林地가 所得이 높은 農地로 伐採 轉換되었다. 새로 등극한 官僚의 科田支給과 復舊에 따른 새로운 職役에 배당할 田柴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開墾獎勵策으로 더 많은 山林이 農耕地 供給基地로 이용되었다. 權門豪族의 農莊 擴大에 따르는 收奪과 掠奪의 대상이었고 私有化의 길로 들어섰다. 한편으로 土地를 빼앗긴 百姓들에게는 生計維持를 위한 開墾과 火田의 대상이었다. 農莊의 擴大와 築城, 建築 등 각종 土木工事に 필요한 資材의 공급으로 局地的인 山林荒廢를 가져 왔고, 계속되는 風水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保安林으로서의 役割을 강조받기도 했다.

高麗末期에는 護國佛敎의 思潮로 大藏經出版을 위한 彫板供給源으로, 外敵을 막는데 필요한 國防裝備과 築城資材源으로, 權門豪族의 私田爭奪地로 轉落하였다. 蒙古支配下에서는 建築 및 造船用材 供給基地로서, 蒙古貢物 提供地로 代採되어 山川林藪의 7割이 대부분 伐採되는 受難을 당하였다. 나라의 存立이 위태로웠을 때 山林의 役割도 위태로웠다. 山林이 가진 洪水土砂流失 防止機能마저도 하지 못하였고, 다만 일부 山林이 風水圖識思想에 의하여 防護林 役割을 하면서 命脈을 유지하여 왔다.

高麗史의 전기간을 통하여 山林은 農地供給, 兵站 및 建築用材 供給基地로서 開墾과 收奪의 대상이었다.

國家의 기강이 확고할 때는 山林도 무성하였으며, 財政이 紊亂할 때 山林은 收奪과 私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즉 山林은 時代的, 社會的 要請에 따라 性格을 달리 하였으며 役割도 달리 하였다.

〈參考文獻〉

1. 船越昭治, 「日本林業發達史」, 養賢堂, 1971, p. 9.
2. 李熙鳳, 「韓國法制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5, p. 156.
3. 高麗史 食貨志 序文
「三國末經界不正 賦歛無藝 高麗太祖即位 首正田制…」
4. 前揭書 食貨志 田制條
「初定役分田 統合時朝臣 軍士 勿論官階 視人性行善惡 功勞大小 給之有差」
5. 前揭書
「高麗田制 大抵倣唐制 括墾田數 分膏墾 自文武百官 至府兵 閑人 莫不科授 又隨科 給樵採地 謂之田柴科 身沒並納之於…」
6. 文獻備考 田賦考一
7. 高麗史 高麗世系
8. 徐統 高麗圖經 樵
「樵人初無專業 惟事隙則隨少長之力 於城外山取之…」
9. 韓泐功,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1971, p. 138.
10. 高麗史 食貨志 田制條
11. 高麗史 食貨志 田制條
「辛禑十四年七月 趙浚上書 太祖龍興 即位三十有四月 迎見群臣 慨然歎曰 近世暴歛 一頃之租 收之六石 民不聊生 豫甚憫之 自今宜用什一…」
12. 高麗史 世家 顯宗五年十二月條
13. 高麗史 食貨志 田制條
「光宗癸酉二十四年十二月判 陳田墾耕人 私田則初年所收全給 二年始與田主半分 公田限三年全給 四年始依法收租」
14. 前揭書 公廩田柴條
15. 高麗史 世家 光宗戊辰十九年條
16. 前揭書 成宗戊子七年二月壬子條
「左補闕兼知起居注 李陽上封書 正月中期後 犧牲母用牝 禁止伐木 無犯盛德所在…從之」
17. 高麗史 食貨志 田制條
「穆宗元年十二月 改定文武兩班及軍人田柴科…」
18. 高麗史 世家 顯宗辛亥二年正月乙亥條
19. 前揭書 顯宗戊午九年十一月癸亥條
20. 前揭書 顯宗甲寅五年十二月條
21. 前揭書 顯宗丁巳八年十二月乙亥條
「是月敕 高句麗 新羅 百濟王陵廟 並令所在州縣 修治禁樵採…」
22. 前揭書 ① 顯宗辛酉十二年二月辛亥條, ② 三月丙申條, ③ 丙寅十七年七月丁未條, ④ 丁卯十八年七月癸亥條, ⑤ 己巳二十年三月庚午條
23. 前揭書 靖宗乙亥元年四月丁巳條
「禮部奏 禁京城名山樵採 遍植樹林 從之」
24. 前揭書 靖宗丙子二年五月丁卯條
25. 前揭書 文宗己亥十三年五月丙辰條
「制兩京百僚 樵蘇地 限馬首嶺 樹禁標」
26. 高麗史 食貨志 田制條
「文宗三年五月 定兩班蔭田柴法…傳之子孫…」
27. 前揭書 文宗己酉二十三年條
28. 前揭書 文宗丙辰三十年十二月條
「更定兩班田柴科…」
29. 高麗史 食貨志 田制條
30. 高麗史 世家 文宗戊戌十二年八月乙巳條
31. 前揭書 睿宗丙戌元年二月乙亥條
「日官秦 松嶽 乃京都鎮山 積年雨水 沙土漂流 巖石暴露 草木不茂 宜栽植裨補 詔可」
32. 高承濟, 「韓國村落社會史」, 一志社, 1977, p. 169.
33. 宋炳基, 「高麗時代의 農場」, 「韓國史研究」, 1969, p. 7.
34. 高麗史 世家 睿宗丙戌元年四月庚寅條
35. 前揭書 睿宗丁亥二年三月丁亥朔
「詔曰 今諸道守令 鮮克循令 或托供膳 以要上賞 或厚饗使客 以悅其意 田墾無時 或農夫火耕 延燒物命 有乖對時育物之義 足傷天地之和 一切禁斷 違者罪之」
36. 前揭書 睿宗丙申十一年三月乙卯條
「沿路田地 有不墾者 必召守令 責之」
37. 前揭書 仁宗丁未五年三月戊午條
「詔曰 山澤之利 與民共之 毋得侵牟」
38. 前揭書 睿宗辛丑十六年五月閏月乙亥條
「其或官吏 因緣公法 苛刻作弊 或以腐朽之穀 強給取息 或徵荒田之租 或與不急之役者…」
39. 文獻備考 田賦考一
「睿宗三年制 諸州縣公私田 川河漂損 樹木叢生 不得耕種 如有 官吏當其佃戶 及諸族類隣保人 徵歛稅糧 侵害作弊者 內外所司察訪 禁除」
40. 高麗史 世家 備考編 佛寺
41. 李敬昌, 「麗代 寺院領擴大 研究」, 「佛教學報 2」; 229, 1964.
42. 高麗史 世家 ① 肅宗辛巳六年五月甲申條, ② 七月辛酉條, ③ 十月丙申條, ④ 仁宗辛亥九年三月癸亥條
43. 前揭書 ① 文宗戊戌十二年八月乙巳條, ② 仁宗辛亥九年六月庚辰條
「制曰 去冬 營宮 三道伐木 民死於役者 頗衆 宜發官粟…」
44. 高麗史 世家 靖宗乙亥元年六月辛未條
「累石城而擬遮大路 堅木寨而欲礙騎兵者」
45. 卜襲兵書, 且襲父設險 有土常規
46. 高麗史 世家 ① 仁宗辛亥九年三月癸亥條, ② 靖宗辛巳七年二月庚辰條, ③ 丙子二年五月丁卯條, ④ 仁宗壬子十年十一月庚辰條
「禮部奏 禁京城名山樵採 遍植樹林 從之」
47. 高麗史 食貨志 田制條
「辛禑十四年 趙浚上書 一畝之主 過於五六 一年之租 收之八九」
48. 高麗史 世家 明宗乙未五年四月丙寅條
49. 前揭書 ① 明宗癸巳三年九月癸卯條, ② 十年壬戌條
50. 前揭書 明宗庚戌二十年九月丙辰條
「詔曰 近民之官 先私後公 損人益己 剝民膏血 恬不爲愧 雖具戚狀 已露 猶且托付權勢 以圖苟免 故習俗因循 狙干姦究 欲臻至治 其可得乎」
② 乙卯二十五年三月癸巳條
51. 高大民族文化研究所, 「武臣執權時期의 土地兼併」, 「韓國文化史大系 Ⅱ」, 1975, pp. 1339—1345.
52. 高麗史 世家 明宗丙午十六年閏七月乙卯條
「詔曰 比來守令 刻剝其民 無所畏忌 人不堪苦 流離日多…」
53. 前揭書 毅宗丙子十年八月丁丑條
54. 前揭書 高宗丁丑四年正月丙辰條

- 「樵人 斫大廟松樹 幾請 乃命軍士禁之 亦不能止」
55. 文獻備考 田賦考十 貢制條
「高宗十七年 減柴炭貢」
56. 高麗史 世家 睿宗丁亥二年三月丁亥條
「詔曰 當萬物發生之時 不磨不卯者 實禮典之成規 而先王之仁政也…違者罪之」
57. 前揭書 ① 高宗壬辰十九年三月甲午條
「然我國每處 人民牛畜 物故損失者 大夥 故這一國區區之地 尚不勝耕墾 忍使鞠為茂草…」, ② 戊戌二十五年十二月條, ③ 壬辰十九年四月壬戌條
「加以貴國兵馬經由 大小城堡 罹害被驅者 不少 自此耗散 而莫有地著專業者」
58. 前揭書 高宗壬辰十九年三月甲午條
59. 前揭書 高宗甲寅四十一年十二月甲申條
60. 前揭書 高宗戊午四十五年十二月甲寅條
61. 前揭書 元宗癸亥四年四月甲寅條
「干戈以後 饑饉相仍 民口之存者 百不二三 土毛之歛者 十無八九」
62. 前揭書 ① 元宗辛未十二年三月丙寅條, ② 四月乙卯條
63. 前揭書 元宗壬申十三年四月丁巳條
64. 前揭書 元宗辛未十二年二月乙卯條
65. 前揭書 元宗辛未十二年七月乙卯條
66. 前揭書 元宗壬申十三年三月庚午條
67. 前揭書 元宗癸酉十四年二月丁亥條
68. 前揭書 元宗癸酉十四年二月癸丑條
69. 前揭書 高宗辛亥三十八年八月壬午條
70. 前揭書 元宗甲戌十五年二月甲子條
「上書中書省曰, 費到省旨云 大船三百隻 今就全羅 耽羅兩處 打造 其所須工匠 木契 及材木等物件 往各道備辦」
71. 前揭書 元宗甲戌十五年六月辛酉條
「上中書省書 曰 今年正月三日 伏蒙朝旨 打造大船三百隻 即行措置 遺樞密院副使 許珙於全州道邊山 左築射洪祿道 於羅州道天冠山…船大小舟九百隻造訖」
72. 前揭書 忠烈王丙子二年十二月甲申條
「是歲 發諸道丁夫 伐木交州道界 輸之京城凍餒多死」
73. 前揭書 ① 忠烈王己卯五年六月辛丑條 ② 九月癸丑條 ③ 十一月己酉條
74. 前揭書 忠烈王甲午二十年正月癸酉條
「罷造船艦 時 王入朝 欲陳東征之便 且以甲戌辛巳兩年之 役濱水材木 斫伐殆盡 造艦實難…」
75. 前揭書 忠宣王己酉元年三月甲辰條
「元宣政院 遣人 來督造船時 皇太后 欲營佛寺 秦白頭山多 美材 若發審陽軍二千 伐之 流下鴨綠江 使高麗舟 載以輸 便」
76. 前揭書 忠宣王己酉元年三月癸巳條
77. 前揭書 忠宣王己酉元年八月辛亥條
78. 文獻備考 財用考 遭運條
「忠烈王十七年 元帝對曰 高麗山川林遺 居十之七耕」
79. 高麗史 世家 忠烈王乙亥元年正月庚辰條
「上表曰 小邦 近因掃除逆賊 惟大軍之糧餉 既連歲而戶收 加以征討倭民 修造戰艦 丁壯悉赴工役 老弱僅得耕種 早晚 水 禾不登場 軍國之需 斂於貧民 至於斗升 罄倒以給 已有採木實 草葉而食者 民之凋弊 莫甚此時」
80. 前揭書 忠烈王丁丑三年二月己巳條
「僉議府諫 公主法令口 及內僚廣占 良田標以山川 多受賜牌 不納租稅」
81. 前揭書 ① 忠烈王戊寅四年三月乙酉條, ② 忠烈王乙酉十一年正月乙酉條, ③ 己丑十五年九月丁丑條
82. 前揭書 忠烈王戊寅四年三月乙酉條
83. 前揭書 恭愍王癸卯十二年四月丙午條
「教曰 近因師族 民不安業 大小朝官 避難在外 侵奪土田 剝 民自利 民生益艱」
84. 前揭書 忠穆王甲申三月丙戌條
「頒詔曰 人民逃避山林 函令有司 剋日招撫 才勸農與學」
85. 前揭書 恭愍王庚戌十九年五月甲寅條
「帝賜聖書曰 近者使歸 問國王之政…去海五十里 或三四十里 民方寧居者 朕詢其故 言倭奴所擾…」
86. 高麗史節要 恭讓王元年四月
「都評議使可議田制時 田大毀兼併 六家讓奪土田籠山絡野 毒痛日深民怨咨 我太祖與大司憲趙浚 欲革私田 李穡以為 不可輕改田法」
87. 鄭道傳 朝鮮經國典上
「山場水梁 前朝之時 若為豪強占奪 公家不得其利焉 殿下即位 革其弊法 收而公家之用 以山場屬繕 取其材木以充營繕」
88. 太宗實錄 太宗七年丁亥五月
「漢城府上都城事宣毅條 路旁各戶 皆令栽木 川邊各戶 各於 兩岸築坊栽木」
89. 太祖實錄 太祖即位二年 洪武二十六年癸酉一月
「吏曹請封 境內名山大川 城隍海島之神…」